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94

발의연월일: 2021. 9. 9.

발 의 자: 강기윤・구자근・김상훈

김선교 · 김은혜 · 김희국

박대수 · 백종헌 · 서병수

엄태영 · 이종성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6월 14일 세계헌혈자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헌혈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표하고 있으나 현재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최근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등에 따른 혈액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혈액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국제적십자연맹, 세계보건기구, 국제헌혈자조직연맹, 국제수혈학회에서도 헌혈자의 날을 지정하고 있는 것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그취지에 부합하는 기념일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6월 14 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헌혈자의 날) ①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7(헌혈자의 날) ①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권
	장을 위하여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
	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
	<u>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u>